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이다.
2.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이다.
3.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다.
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 제 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이다.
5.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이다.
6.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다.

③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2.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
3. “수익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5. “신탁계약”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 및 추후에 변경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6.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들을 말한다.
7.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8.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함은 법 시행령 제261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위원회를 말한다.
9. “투자신탁”이라 함은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을 말한다.
10.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 함은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11.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제2조 제3항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12. “기준가격”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산정된,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가치를 말한다.
13. “신탁업자”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말한다.
14. “수익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1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가. 피델리티 월지급식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17.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1,000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의

총좌수는 60,000,000,000,000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1,000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1,000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시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 및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 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3. 종류 AG 수익증권
4. 종류 C1 수익증권
5. 종류 C2 수익증권
6. 종류 C3 수익증권
7. 종류 C4 수익증권
8. 종류 C-e 수익증권
9. 종류 CG 수익증권
10. 종류 C-w 수익증권
11. 종류 CP 수익증권
12. 종류 CP-e 수익증권
13. 종류 PRS 수익증권
14. 종류 PRS-e 수익증권
15. 종류 S 수익증권
16. 종류 S-PRS 수익증권
17. 종류 S-I 수익증권
18. 종류 I 수익증권
19. 종류 F 수익증권
20. 종류 N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6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7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및 규정, 신탁계약 및 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익증권 전체 또는 종류별로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기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이 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당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이 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차감한 금액(이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을 포함한다)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2. 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3. 종류 AG 수익증권: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4. 종류 C1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5.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투자자
6.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투자자
7.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투자자
8.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9.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10.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11. 종류 CP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12. 종류 CP-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13. 종류 PRS 수익증권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14. 종류 PRS-e 수익증권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15. 종류 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16. 종류 S-PR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17. 종류 S-I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18.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까지 투자하는 법인
19. 종류 F 수익증권 :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
20. 종류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해외 계열사

②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 제4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17시 경과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 제4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2 (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및 종류 AG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납입금액•판매회사•납입회수•납입기간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0% 이하
2. 종류 A-e 수익증권:
   최초 설정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입금액의 0.60% 이하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의 0.50% 이하
3. 종류 AG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0% 이하

③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및 종류 AG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④ 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⑦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20조의 3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 요청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한다.

제20조의 4 (수익증권 최소매수금액)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함에 있어, 최소 매수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20조의 5 (매수청구서 양식)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6 (매수청구 접수시간)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17시까지 수익증권매수청구 및 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매수청구는 당해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17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매수청구 및 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매수청구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 7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22조의 2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판매회사(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의 2 (환매청구 접수시간)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17시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 환매청구는 당해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17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환매청구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24조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7영업일로 본다)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제21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다만, 제6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① 제26조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신청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26조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제1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동일 투자신탁내 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한다. 다만,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한다.

⑤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 3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매수한다.

④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환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전환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⑤ 본 조에 따라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전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⑦ 본 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⑧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본다)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⑨ 전환에 따른 환매에는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7조의 3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빈번한 투자재산의 매매를 지양한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빈번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수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제28조 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이하 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제28조 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제29조에 따라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된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32조 (의결권 등)

① 의결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리인은 관련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④ 제28조 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3.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한다)

제37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

1.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다.

2.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3.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본 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해당금액)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3.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2. 종류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3. 종류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4. 종류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5. 종류 C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6. 종류 C3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7. 종류 C4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8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8. 종류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9. 종류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0. 종류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1.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2. 종류 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3. 종류 PR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6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4. 종류 PRS-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5. 종류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6. 종류 S-PR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7. 종류 S-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8. 종류 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19. 종류 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20. 종류 N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4.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함에 있어,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 포함)로부터 제11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 자산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등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신탁업자의 사임 등

제47조의 2 (신탁업자의 사임 및 교체)

① 신탁업자는 새로운 신탁업자가 선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사임할 수 없다. 신탁업자의 지위를 사임하고자 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원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업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임 신탁업자를 물색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절차를 통해 기존의 신탁업자를 신임 신탁업자로 교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임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수익자들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교체함에 있어 모투자신탁을 비롯하여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자투자신탁에서도 각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업자 변경절차를 걸쳐 각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신임 신탁업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 적용면제가 해당 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9조의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해당 변경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최소 1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공고가 이루어지는 일간신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단,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3개월 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분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저축)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PRS, PRS-e 및 S-PRS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 2 (통지)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서면(팩스, 컴퓨터 통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송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그 외 방식)으로 발송하는 모든 통지는 투자신탁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최종 통지된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전자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에 적법하게 발송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관련 법령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부 칙 (2013.02.15)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본 투자신탁 등록의 완료 및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3.08.30)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4.03.14)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5.06.19)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6.02.29)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6.06.15)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7.04.29)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7.09.04)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19.09.25)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21.04.30)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23.09.20)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

부 칙 (2024.09.06)

제1조 (시행일)

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